

KOSHA GUIDE

H-217-2022

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2022.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운정와이즈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조민희
  
- 제·개정경과
  - 2022년 산업의학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KOSHA GUIDE H-4-2021, 일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 KOSHA GUIDE H-200-2018,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 KOSHA GUIDE H-22-2019,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 KOSHA GUIDE H-214-2021, 암 경험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 KOSHA GUIDE H-190-2021, 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 2021
  - NIOSH, Plain Language about shiftwork, 1997
  - 불면증 임상진료지침, 불면증의 진단과 치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 편, 2019
  - 이지혜 등, 야간근무자의 수면장애 실태 및 관리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연구원-1075, 2017
  - 김은아 등,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현황 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연구원-1051, 2017
  - 정인성 등, 취약지역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실시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산업안전보건연구원-596, 2021
  
- 관련 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1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1조, 별표 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2조, 별표 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6조, 별표 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10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97호 제 20조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http://www.kosha.or.kr))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22년 12월 31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 1. 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130조 제 4항 및 제 132조 제 4항에 따라 사업주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사업주가 취해야 할 사후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3. 용어와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 132조 제 4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관리

##### 4.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 (1)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 134조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 85호 서식)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sub>N</sub>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 <sub>N</sub>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 2차 건강진단대상자)

※ “U”는 2차 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 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를 말함.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을 내릴 때 일정한 조건이나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조치사항(사후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 <sup>(1)</sup>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sup>(2)</sup>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3	추적검사 <sup>(3)</sup>
4	근무중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6	작업전환
7	근로제한 및 금지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 병 확진의뢰 안내
9	기타 <sup>(4)</sup>

- ※ (1) 사후관리 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야간작업 요관찰자(C<sub>N</sub>), 야간작업 유소견자(D<sub>N</sub>)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 4.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4.2.1 사후관리의 시행

(1)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32조제4항)

(2)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2조제5항, 시행규칙 별지 제 86호 서식)

(3) 사업주는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 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규칙 제210조제1항)

(4)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86호 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규칙 제 210조제4항)

(5)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법 제138조 1항)

(6)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 138조 2항)

(7)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규칙 제 202조 3항)

(8) 사업주는 법 제130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9)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97호 제 20조 1항)

(10)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97호 제 20조2항)

(11)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 2항의 조치(10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97호 제20조3항)

#### 4.2.2. 건강상담

(1) 흡연, 음주, 운동, 식습관 등 뇌심혈관질환이나 소화기질환, 수면장애 등의 이상 소견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습관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사업주는 보건관리 의사 및 간호사 상담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건강상담을 통한 생활 습관의 관리는 1차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생활습관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 4.2.3.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1) 야간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보호구를 착용함으로써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지급한다.

#### 4.2.4. 추적검사

(1) 건강진단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는 추가적 검사와 그 검사를 해야 할 시기를 기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추적검사를 정확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예) 고혈압 - 혈압측정, 당뇨병 - 공복혈당, HbA1C, 이상지질혈증 - LDL 직접법 측정, 위장질환 - 위내시경, 유방암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등

#### 4.2.5. 근무 중 치료

(1) 건강진단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보건관리자는 해당과에 정밀검사나 치료를 하도록 권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예) 뇌심혈관질환 - 심장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불면증 -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위장질환 - 소화기내과  
 유방암 - 유방외과

#### 4.2.6. 근로시간 단축

(1) 야간작업 종사자 중에서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지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나 산업보건외과가 명시할 수 있다. 사업장 담당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예) 8시간 -> 4시간 단축근무

#### 4.2.7. 작업전환

(1) 야간작업을 수행할 경우 건강 악화의 우려가 있거나, 증상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나 산업보건외과는 야간작업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예) 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  
 혈당이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 및 고혈압

반복성 위궤양, 증상이 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우울증  
 교대제 부적응 증후군  
 유방암

#### 4.2.8. 근로금지 및 제한

(1) 야간작업을 수행할 경우 건강악화의 우려가 있거나, 증상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야간작업을 금지한다.

(2) 다만, 치료나 근무조건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야간작업이 가능할 경우는 “작업전환”이 아니라 한시적 “근로금지 및 제한”에 해당한다. 향후 치료나 작업조건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야간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작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4.2.9. 산재요양신청서 작성 등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1)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업무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진단만으로 건강장해가 직업성 질환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조치는 야간작업 종사자 건강진단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 야간작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업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예) 뇌심혈관질환, 유방암, 수면장애

#### 4.2.10. 기타

(1) 교대근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역방향→순방향

(2) 야간작업 중 수면장소 및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예) 사이 잠 2시간 이내 제공

(3)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며,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 정밀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 야간작업 배치 전 업무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근로자

- ① 간질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근로자
- ② 불안정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자
- ③ 스테로이드 치료에 의존하는 천식환자
- ④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 ⑤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 ⑥ 야간작업으로 인해 약물치료가 어려운 환자(예) 기관지확장제 치료 근로자)
- ⑦ 반복성 위궤양 환자
- ⑧ 증상이 심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 ⑨ 만성 우울증 환자
- ⑩ 교대제 부적응 경력이 있는 근로자

## 5.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질환별 사후관리 유의점

### 5.1. 신경계 - 수면장애

(1) 개인 수면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상담이 중요하다. 또한 작업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H-22-2019)

(2) 일반적으로 7~9시간의 지속 수면이 권장되지만 주간 수면은 사회적 업무의 수행을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서 수면을 취할 수 있다.

(3) 야간근무 동안 사이 잠을 제공할 수 있다. 적어도 20-30분 이상의 수면이 도움이 되고 그보다 적은 수면은 오히려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수면이 규칙적인 수면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4) 하루 1-3잔의 커피는 각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카페인 사용은 야간 근무의 전반부로 제한되어야 하며, 취침 예상 시간 8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카페인 섭취와 동시에 가수면을 할 경우 졸음을 완화하고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5) 음주는 졸음이 오게 할 수는 있으나 너무 빨리 잠에서 깨게 만들고,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음주를 하지 않는다.

(6) 취침시간이 가까워지면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수면에 방해가 된다.

(7) 운동요법은 수면항상성의 강화 및 일주기리듬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며, 수면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어 권장한다. 근무 시작 전 20-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적절한 운동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다. 수면 전 3시간 이내의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8) 잠들기 전 멜라토닌의 복용은 수면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멜라토닌은 뇌 속의 송과선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호르몬인데, 멜라토닌의 생성은 날이 어두워지면 많아지고, 날이 밝으면 줄어든다. 밤에 너무 밝은 빛에 노출되거나 낮에 충분한 양의 빛을 쬐지 못하면, 몸의 멜라토닌 생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력이 안 좋을 경우에도 멜라토닌 생성이 줄어든다.

(9)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이나 오전에 퇴근을 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10) 불규칙한 수면각성주기를 조절하기 위해 광치료 도구(예, 라이트 박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늦게 잠드는 수면위상지연증후군의 경우 아침에 밝은 빛을 쬐이게 하면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수면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일찍 잠이 드는 전진수면위상증후군의 경우는 초저녁에 밝은 빛을 쬐이게 하면 매일 조금씩 수면시간을 뒤로 미룰 수 있다.

(11) 야간 특수건강진단 지침에서는 1차로 불면증 증상 문진은 불면증 지수

(Insomnia Severity index, ISI) 문진표로 평가하며, 불면증이 의심되면 2차로 심층면담 및 문진을 하게 되어 있다. 2차 심층면담은 주간졸림증 평가도구 (Epworth sleepness scale, ESS)와 수면의 질 평가도구(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문진표를 활용한다.

(12) 불면증 증상이 지속될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 의뢰한다. 특히 수면제의 사용이 4~5주를 넘어가는 경우는 부작용을 포함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숙련된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5.2. 심혈관계 -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1) 뇌심혈관계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의 관리는 임상 검사결과 수치를 보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야간작업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업장내 뇌심혈관질환 관리에 관해서는 다음의 지침을 참고한다.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H-200-2018, 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H-190-2021, 당뇨병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지침 H-98-2021)

(2)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될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를 위하여 단지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뇌심혈관질환 발병 또는 악화의 위험요인으로서 작업(장시간근무, 교대근무, 야간작업 등) 및 작업환경(소음, 한랭, 고열 등)의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 5.3. 위장관계 질환 - 기능성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1) 위장장애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습관과 영양섭취가 요구되며 야간근무 시에는 과식하지 않고 칼로리가 낮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하도

록 한다.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단 음식은 피한다.

(2) 야간작업 후 잠들기 전에는 음주, 담배와 카페인의 과다복용은 위장장애 악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3)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침은 1차 검사에서 위장장애 관련 문진 및 상담을 통해 위험군을 선별하여 최근 2년 이내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2차 검사로 위내시경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4 내분비계 질환 - 유방암

(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침에서는 1차 검사에서 증상설문지 및 상담을 통해 위험군인 경우,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35세 이상이면 2차 검사로 유방촬영 및 유방초음파(임신가능성 있는 경우)를 진행한다. 만약, 유방촬영에서 치밀유방, 석회화병변 소견이 있다면 유방초음파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2) 유방암환자의 관리 및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지침을 참조한다. (암 경험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H-214-2021)

(3) 야간근무는 유방암의 위험요인이므로 재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완전관해가 될 때까지는 제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	사업장 관리번호

사후관리 조치 소견 현황	유소견자	합계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직업병						
	직업 관련 질병 (야간작업)						
	일반질병						
	요관찰자						
	직업병						
	직업 관련 질병 (야간작업)						
	일반질병						
	건강진단결과 통보일						

사후관리 조치결과	성명	성별	나이	유해인자	건강구분	사후관리 소견	건강진단결과 송부받은 날	사후관리 조치일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건강진단결과표 2. 건강진단결과표를 통보받은 날 또는 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후관리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계획
-------	--

### 작성방법

1. 사후관리조치 소견 현황은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와 동일하게 작성
2. 사후관리조치 결과 중 성명, 성별, 나이, 유해인자, 건강구분, 사후관리소견은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와 동일하게 작성
3. 송부받은 날은 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일자 작성